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8가합5132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배준식, 양혜윤, 유선진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차현영

변 론 종 결 2021. 1. 20.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3. 체결된 대물변제약정,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4. 체결된 대물변제약정,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을 700,218,4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218,4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3. 체결된 대물변제약정,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4. 체결된 대물변제약정,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을 1,275,891,9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75,891,9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분양형 호텔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나주시 D 외 3필지 지상의 E호텔(지하 3층, 지상 7층, 객실 300실 규모,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C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 시행자인 C는 2014. 6.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위탁운영하고, C는 초기운영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호텔 수분양자의 임대수익 보장기간 1년 동안에 발생하는 8%중 4%의 임대수익 보장금액을 호텔운영개시 시점에 신탁사에 원고와 공동명의로 예치하며, 원고에게 브랜드 공급비 150,000,000원, 객실 분양률 기준 30% 달성 시 기술자문과 PM수수료 150,000,000원, 1년간 위탁운영수수료 호텔운영 매출액의 3.5%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탁운영계약과 별도로 C에게 2014. 11. 13.부터 150,000,000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여 2017.까지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였다. C는 2017. 6. 19.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F 작성 증서 2017년 제853호로 “운영손실보전금 및 위탁운영수수료 등 미지급금으로 5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위 금원을 2017. 6. 30.까지 변제하며,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① 2014년부터 2017. 6. 30.까지 대여한 금원 중 미변제금 116,059,640원, ② 2016. 5. 1.부터 2017. 6. 15.까지의 위탁운영수수료(매출액의 3.5%) 45,455,160원, ③ 2016. 5. 1.부터 2017. 6. 15.까지 호텔운영 손실 미보전금 542,583,462원, ④ 위 공정증서의 약정금액에 대한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 75,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G를 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1113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2. “C는 원고에게 779,000,000원 및 그 중 704,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10.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G는 이 사건 호텔 중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객실’이라 한다),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객실’이라 한다), 별지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상가’이라 하고, 이 사건 제12객실과 이 사건 제3상가를 모두를 지칭하는 때에는 ‘이 사건 객실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일부 객실의 소유권은 2016. 9. 23.자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달 23. 또는 26. H 주식회사에게, 2016. 9. 27.자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I에게 각 이전되었고, 나머지 객실과 상가의 소유권은 2016. 11. 11.자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달 14. J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다.

바. 이 사건 객실 등의 소유권은 2017. 2. 27. 또는 2017. 3. 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그 무렵 C에게 다시 이전되었고, 이후 이 사건 제1객실의 소유권은 2017. 2. 23. 대변변제를 원인으로 2017. 3. 3., 이 사건 제2객실의 소유권은 2017. 2. 2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2017. 3. 3., 이 사건 제3상가의 소유권은 2017. 2. 27.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2017. 2. 28. 피고에게 각 이전되었다(이하에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위 각 대물변제 약정을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이라 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제12객실의 소유권을 2017. 3. 3.자 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날 H 주식회사에게 이전하였고, 이 사건 제3상가 소유권을 2017. 2. 27. 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달 28. J 주식회사에게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갑 제7 내지 14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직원 K가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의 예약에 해당하는 2017. 1. 20. 합의를 중재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도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의 예약이 체결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2018. 2. 2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와 피고가 2017. 1. 20. “C의 이 사건 호텔 관련하여 미정산 공사대금 5억 원의 채무와 대여금에 대한 이자금 21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호텔의 일부 객실과 상가를 대물변제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음을 재확인하며, 본 합의서 작성일 이후 미분양호실(상가 4개호실, 객실 68개호실)을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분양을 한 후 분양호실에 대한 분양대금에서 분양대행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50:50으로 각각 배분하기로 하고, 정산기간은 본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2개월로 하며, 미분양호실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C가 일체의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2017. 1. 20.자 합의’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F 등부 2017년 제139호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2017. 1. 20.자 합의 내용과 함께, 위 인증서에 기재된 정산기간이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17. 3. 20.이고,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이 그 이전인 2017. 2. 하순에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1. 20.자 합의를 곧바로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의 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원고의 직원 K를 통하여 2017. 1. 20.자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 당시 C에 대하여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호텔의 위탁운영수수료 및 호텔운영 손실 미보전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성립

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위탁자가 위와 같이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신탁재산가액인 이 사건 객실 등에 대하여 신탁비용, 채무 등의 공제가액을 차감하고 이를 기준시점까지 현가로 할인하여 산정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의 가치가 합계 4,660,768,380원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대물변제 각 약정 당시 M조합에 약 18억 원, N조합에 약 9억 원, O조합에 약 4억 원, P조합에 약 5억 원, Q조합에 약 17억 원의 각 대여금 채무, 피고에 대한 약 26억 원의 채무, 원고에 대한 약 7억 원의 채무 외에도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확정수익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C는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었다.

다) 따라서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으로 유일한 적극재산인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피고에게 처분하였고,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으로 변제되는 것으로 합의한 채무액이 합계 1,971,718,1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객실 등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의 가치 합계 4,660,768,38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는 2016. 12.경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에 관하여 C와 이 사건 호텔의 상가 및 객실로 대물변제 받기를 합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에 대하여 선의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객실 등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의 가치가 4,660,768,380원임에도 변제되는 채무액이 1,971,718,100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악의에 대한 추정이 반복되어 선의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의 기초가 된 2017. 1. 20.자 합의를 중재한 사정,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 이전에 원고의 계열사인 R 주식회사가 이 사건 호텔 객실 4개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 20.자 합의를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의 예약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K를 통하여 위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원고의 계열사인 R 주식회사가 이 사건 호텔 객실 4개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위탁자가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게 하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에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단순히 말소하게 되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이때는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의 평가금액 한도 내에서 위탁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참조).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 이전에 발생한 대여금 112,179,861원의 채권, ② 2014. 6. 19.자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2016. 5. 1.부터 2017. 6. 15.까지 발생한 이 사건 호텔의 미지급 위탁운영 수수료 45,455,160원의 채권, ③ 2014. 6. 19.자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2016. 5. 1.부터 2017. 6. 15.까지의 이 사건 호텔 운영손실보전금 542,583,462원의 채권, ④ C가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확정수익금 채무를 원고가 2018. 11. 16.과 2020. 6. 23. 대신 지급하여 취득한 392,876,311원의 구상금 채권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계속 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장래에 대신 지급하여 취득하게 될 182,797,190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으므로, 위 각 채권액 합계 1,275,891,984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의 취소를 구한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채권자의 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위 채권액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기본채권이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성립하고 있는 이상 사해행위가 있는 후 변론종결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되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다) 원고가 C에 대한, ① 2014년부터 2017. 6. 30.까지 대여한 금원 중 미변제금 116,059,640원, ② 2016. 5. 1.부터 2017. 6. 15.까지의 위탁운영수수료(매출액의 3.5%) 45,455,160원, ③ 2016. 5. 1.부터 2017. 6. 15.까지 호텔운영 손실 미보전금 542,583,462원, ④ 위 공정증서의 약정금액에 대한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 75,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11136호로 ‘C가 원고에게 779,000,000원 및 그 중 704,000,000원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채권 중 대여금, 위탁운영 수수료, 운영손실보전금 채권의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 이전에 성립하고 있었던 점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① 대여금 112,179,861원의 채권, ② 위탁운영 수수료 45,455,160원의 채권, ③ 호텔 운영손실보전금 542,583,462원의 채권 합계 700,218,483원의 채권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한편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 객실 분양 시 C와 원고 및 수분양자들 사이에, C와 원고가 분양목적 객실을 위탁운영하여 수분양자에게 연간운영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C가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확정수익금 채무를 원고가 2018. 11. 16.과 2020. 6. 23. 대신 지급하였거나 장래 지급하여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위 ④의 구상금 채권은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대여금, 위탁운영수수료, 운영손실보전금 채권과 다르고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 이후에 성립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 당시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액을 가액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서 인정되는 가액배상의 범위는 700,218,483원(= 대여금 채권 112,179,861원 + 미지급 위탁운영 수수료 채권 45,455,160원 + 운영손실보전금 채권 542,583,462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객실 등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채권액인 700,218,4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00,218,4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표, 판사 김정현, 판사 조영은

별 지 1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W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8.35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9796

2.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X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3.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Y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3.3064m³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CH 755.1m²

2. S

CH 806m'

3. T

CH 781.4m³

4. U

대 233.9m³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9.3724

4.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m²6층 1488.9682m³7층 1488.9682m³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³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²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 분의 7.3013

5.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AA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6.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AB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192

7.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AC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2.29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6.2741
 8.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AD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2.29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6.2741

9.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AE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2.29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6.2741

10.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AF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8.3569m³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m²

2. S

대 806m²

3. T

대 781.4m³

4. U

대 233.9m²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9796

1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m²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AG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2.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AH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3.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AI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4.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AJ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3.30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CH 755.1 m³

2. S

대 806㎡

3. T

대 781.4m²

4. U

대 233.9m²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9.3724

15.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m²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AK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6.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AL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7.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AM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8.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m²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N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8.3569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

3. T

CH 781.4m²

4. U

대 233.9m³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9796

19.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O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20.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P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별 지 2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Q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0.99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5.9083

2.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R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3.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S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3.30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9.3724
 4.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T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 분의 7.3013

5.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U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6.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V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7.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m'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W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2.2964m³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²

2. S

대 806m²

3. T

대 781.4m²

4. U

대 233.9m²

대지권의 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6.2741

8.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²

지하2층 2186.9725m²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m²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

6층 1488.9682m²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AX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8.3569m³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²

2. S

대 806m²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9796

9.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AY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0.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AZ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BA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2.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BB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3.30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9.3724

13.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BC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4.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BD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5.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BE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6.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BF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2.821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6.4219

17.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BG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8.3569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9796

18.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m²

6층 1488.9682㎡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BH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²

2.5

대 806m²

3. T

대 781.4m²

4. U

대 233.9m²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9.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m'

5층 1488.9682㎡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B[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20.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B[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3.30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9.3724

2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BK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22.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BL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23.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BM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24.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7층 BN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25.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7층 BO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26.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m²5층 1488.9682m²

6층 1488.9682m²

7층 1488.9682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7층 BP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3.30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CH 755.1m'

2.5

대 806m²

3. T

대 781.4m²

4. U

대 233.9m²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9.3724

27.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²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m²

7층 1488.9682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7층 BQ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28.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7층 BR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29.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7층 BS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끝.

별 지 3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BT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5.4600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21.2313

2.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BU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3.9600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17.9957

3.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²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BV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9.5360m³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²

2.5

대 806m²

3. T

대 781.4m²

4. U

대 233.9m²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19.5645

4.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²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m²

1층 1747.2308m²

2층 1488.9682㎡

3층 1488.9682m'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BW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9920m³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²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 분의 18.8488

5.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BX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1.6200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17.3373

6.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BY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31.8360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93.3657. 끝.